

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「지문등 사전등록제」 설명자료

□ 개요

-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'아동등'의 지문·사진 등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(프로파일링 시스템)에 등록하고,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

※ 아동등 : 18세미만 아동,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인, 치매환자

- 관련근거 : 실종아동법 제7조의 2



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(「지문등 정보」)를 등록할 수 있다.

- 등록방법 : '안전드림 홈페이지', 또는 '안전드림 앱'에서 직접 등록하거나, 경찰관서(지구대, 파출소) 방문등록 및 어린이집·유치원 등 현장방문 시 등록

□ 그간 경과 및 필요성

○ 사업추진 경과

- '12.7.1 개정 '실종아동법' 시행, 사전등록제 운영
- 행정안전부 『전자정부 지원 2·3단계 사업』 추진
 - ※ 사전등록시스템, 지문·얼굴인식 검색체계 구축 및 6개광역시(2단계)·전국(3단계) 사업추진
- '14~'18년 경찰청 자체시행 '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' 지속 추진
 - ※ '18년 8세미만 아동,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인, 치매환자 대상 현장방문 등록 사업 추진
- '17. 1. 16 모바일 '안전드림' 앱의 지문·사진 등록 기능 구축
- '18년 치매안심센터 방문한 치매노인 대상, 사전등록 서비스 시행중

○ 필요성

- 등록대상 935만명중 373만명 등록, 등록률 39.8%로 지속적인 등록 필요

【 대상별 사전등록 현황 및 등록률 】 ('18. 4월말 기준)

구 분	총 계	18세미만아동	지적장애인	치매환자
대 상	9,352,114	8,480,447	326,776	544,891
사전등록	3,725,573	3,581,944	81,048	62,581
등록률	39.8%	42.2%	24.8%	11.5%

※ 출처 :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통계, 복지부 유치원·어린이집·지적장애인 통계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매진단 통계('17.12월말 기준)

- 지적장애인·치매환자는 아동과 달리 재가 장애인이 많아 단체등록 곤란 및 보호자 인식 문제*로 등록률 저조, 이에 대한 민官警 협업 구축 필요

* 제도 이해 부족(아동 대상 제도로 인식), 등록 기피(정신적 질환 공개) 등

□ 사업성과 및 주요반응

○ 사업성과

- ‘경찰에 실종신고 되기 前’ 아동 신원확인이 가능해 짐에 따라, 매년 증가 하던 실종아동등이 사전등록 제도 시행 이후 발생건수가 10% 감소

구 분	총계		아동(18세 미만)		지적장애인 등		치매환자	
	발생	증감	발생	증감	발생	증감	발생	증감
‘10년	40,261	21.5%	26,984	23.6%	6,708	19.0%	6,569	15.8%
‘11년	43,080	7.0%	28,099	4.1%	7,377	10.0%	7,604	15.8%
‘12년	42,169	-2.1%	27,295	-2.9%	7,224	-2.1%	7,650	0.6%
‘13년	38,695	-8.2%	23,089	-15.4%	7,623	5.5%	7,983	4.4%
‘14년	37,522	-3.0%	21,591	-6.5%	7,724	1.3%	8,207	2.8%
‘15년	36,785	-2.0%	19,428	-10.0%	8,311	+7.6%	9,046	+10.2%
‘16년	38,281	+4.1%	19,870	+2.3%	8,542	+2.8%	9,869	+9.1%
‘17년	38,789	+1.3%	19,956	+0.4%	8,525	-0.2%	10,308	+4.4%

11년→17년 대비	-4,291	-10.0%	-8,143	-29.0%	+1,148	+15.6	+2,704	+35.6
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	--------	-------

- 사전등록 정보활용 발견 현황

(‘12. 7. 1 ~ ‘18. 4. 30)

계	아동(18세 미만)	지적장애인	치매환자
422	219	154	49

※ 주요 발견 사례

- ▶ <아동> ‘18. 1. 29. 16:20경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부근에서 길 잃은 아이(3세, 男)를 지나가던 시민이 보호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, 사전등록 자료 활용하여 25분만에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
- ▶ <지적 장애인> ‘18. 1. 7. 09:46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편의점에서 ‘정신이 이상한 사람(21세, 남)이 있다’는 시민 제보를 받고, 사전등록 자료 활용하여 44분만에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
- ▶ <치매환자> ‘18. 3. 4. 21:14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번길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길을 잃고 배회하고 있는 치매환자(83세, 女)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전등록 정보 확인하여 36분만에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

○ 주요반응

- 사회적 약자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정부·국민 공감대 형성

- ☞ ‘13. 3월, 대국민 설문조사(2,852명) 결과, 필요성 공감 70%, 주변 추천 93%
- ☞ ‘13. 6월, 정부3.0 우수사례 선정(사전등록 및 부처간 협업)
- ☞ ‘15. 3월, VIP 축사 “사전등록 등 경찰 노력으로 실종아동을 많이 발견”
- ☞ ‘18. 1~4월, 주요 언론 보도 내용(171건) “사전등록률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 필요”

<붙임 1>

□ '18년 『찾아가는 현장 단체 등록』 사업 추진

○ 사업 기간 : '18. 5. 8~11. 4 (180일)

○ 등록 대상 및 시설

- 아동(8세미만) : 어린이집, 유치원 등
- 지적·자폐성·정신 장애인 : 초·중·고 특수학급, 특수학교, 장애인시설
- 치매환자 : 요양병원·센터, 노인시설 등

○ 등록 진행 절차

- 단체 등록 희망시설 신청 접수(경찰청·사업자)
- 신청시설 대상으로 방문일시 조율 및 보호자 발송용 안내문·등록 신청서 양식 송부(사업자)
- 알림장 등 활용, 보호자에게 안내문·신청서 송부 및 회수(해당 시설)
- 등록 인력 방문, 보호자가 신청서 제출한 아동등 대상 사전등록 실시(사업자)

○ 등록신청 접수기간 : '18. 5. 28 ~ 9. 21

○ 시설방문 등록기간 : '18. 6. 11 ~ 10. 17

□ 협조 요청사항

○ 관계기관은 소관 아동등의 시설대상으로 “찾아가는 단체등록” 신청토록 적극 권장

※ 단체등록은 보호자 참여도 중요하지만, 시설장의 관심 및 참여 의지 필요

○ “찾아가는 단체등록” 등 사전등록제 홍보 협조(관련 공무원, 시설, 보호자 등)

○ 관계기관은 “찾아가는 단체등록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*에 대한 해당시설 현황(소재지, 연락처, 현원 등) 등 제반자료 제공 협조

* 교육부는 특수학교·특수학급 및 유치원, 복지부는 어린이집 등

○ 관계기관 실무회의 시 담당자 참석(회의 일정은 상호 의견조율 후 결정)

○ 아동등의 사회 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 제시 등

□ 사전등록 방법

- 보호자 직접 등록(자가등록) : 보호자가 “안전Dream” 앱(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)에서 본인 인증 후, 정보 직접 등록
- 현장방문 단체등록(현장등록) : 경찰 또는 등록 인력(민간)이 어린이집 · 유치원·특수학교·요양센터 등 시설에 직접 방문, 사전등록
 - 등록 대상 :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“아동등”
 - 방문 시설 : 사전에 경찰(또는 등록 인력 사업자)과 방문 관련 협의된 시설
 - 등록 내용 : 보호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, 사진 촬영 및 지문 정보
- 경찰관서 방문 등록(방문등록) : 보호자가 등록 대상 “아동등”을 데리고 경찰관서 방문,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촬영 및 지문 등 정보 등록

□ 사전등록 정보의 활용·관리

○ 사전등록 정보 활용, 실종아동 발견 절차

- 112 신고 등을 통해 길 잃은 아동등(미아) 발견, 경찰관 보호
- 미아의 지문, 사진, 신체특징 등 정보를 사전등록 DB와 비교·검색(폴리폰 활용)

- 지문 : 미아 지문과 사전등록 지문정보 비교·검색(지문 특징점 알고리즘 적용)
- 얼굴 사진 : 미아 얼굴과, 사전등록 사진정보 비교·검색(안면 인식 유사도 매칭)
- 기타 : 미아의 신체 특징(점·흉터 등)을 사전등록 정보와 유사 정보검색

- 사전등록 정보에서 일치 정보 확인, 신청 시 기재된 보호자에게 연락, 인계

○ 사전등록 정보에 대한 수정·폐기

- 수정 : “안전Dream”을 통해 직접 또는 경찰관서를 방문해 정보 수정 가능
- 폐기 : 보호자가 폐기 요청 시 즉시 폐기
 - ※ 아동(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인, 치매환자의 경우 제외)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폐기

○ 사전등록 정보의 관리(유출 방지 대책)

- 등록 정보는 암호화 상태 전송·저장(5단계 암호화 보안정책 적용)
- 실종아동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 등 특정인에게만 등록·열람 권한 부여
- 실종아동 찾기 목적외 정보 사용 시 처벌 규정(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
 - ※ 특히 지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

<붙임 2> 유의사항 및 사전등록 신청서

【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】

① 사전등록 신청은

- '신규' 신청자 위주로 받고 있으며, '기존' 등록자도 변경신청 가능
- 기존 사전등록 정보를 보호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.

구글 플레이, 앱스토어에서 '안전Dream 앱'다운 ⇨ 사전등록신청·확인
선택 ⇨ 휴대폰 본인확인 ⇨ 대상자 선택 ⇨ 정보 변경

※ 「사진」, 「신체특징」 등 '지문'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변경 가능

② 사전등록 신청서 입력시 주의점(필독★)

- *표시된 항목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성별 등)은 필수 항목
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
- *표시가 없는 곳(흉터, 점 또는 문신, 병력, 그밖의 특징, 그 밖의 정보)은
선택 항목으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며, 입력시에는 확연히 눈에
띄는 특징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주세요
- 선택표시는 각 항목의 앞부분에 하도록 되어있음
※ 작성 예) []비만 [✓]건장 []보통 []왜소 []특이
- 인터넷'안전Dream', 안전드림 앱에서 기본사항을 직접 등록하신 경우
상단에 △ 등록 여부 표시 △ 신청인 및 아동등의 성명만 기입
⇨ 시설 방문 현장 등록 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③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요령

- 등록대상(아동등) 정보 중 기본정보(박스 진하게 처리된 곳)는 필수항목
이니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
예) 성명, 주민번호, 대상구분, 성별, 주소, 키, 체중, 체격, 얼굴형, 머리색
- 신청인(부모)의 정보 중 기본정보(박스 진하게 처리된 곳)는 필수항목이니
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
예)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대상자와 관계
⇨ 아동등의 정보 필수항목(10개항목)과 신청인(보호자)의 정보(5개항목)
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하여 주시면 방문 등록해 드립니다.

신규 등록자 여부 : ☐ 신규 등록자 ☐ 기존 등록자
 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 등록여부 : ☐ 등록 ☐ 미등록

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* 표시된 곳은 필수 입력 항목이므로 반드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

등록대상 아동등의 정보	기본 정보	성 명*	주민등록번호*		
		대상 구분*	[]아동(18세 미만) []지적,자폐성,정신장애인(연령 불분) []치매환자		
		성 별*	[]남 []여		
		주 소*			
	신체 특징	키(cm)*	체중(kg)*		
		체 격*	[]비만 []건강 []보통 []왜소 []특이 []직접기재:		
		얼 굴 형*	[]삼각형 []역삼각형 []계란형 []사각형 []둥근형 []가름한형 []직접기재:		
		머 리 색*	[]검은색 []흰색 []반백 []갈색 []염색 []직접기재:		
		흉 터	위 치	[]머리 []얼굴 []팔 []손 []등 []몸통 []둔부 []다리 []발 []직접기재:	
			모 양		
점 또는 문신		위 치	[]머리 []얼굴 []팔 []손 []등 []몸통 []둔부 []다리 []발 []직접기재:		
		모 양			
병 력		[]뇌질환 []심장질환 []간질환 []기타 내과질환 []외과질환 []직접기재:			
그 밖의 특징					
그 밖의 정 보	실종(가출)경력 []없음 []1회 []2회 []3회 이상				
	주로 다니는 장소				
신청인	성 명*	주민등록번호*			
	주 소*	전화번호*			
	대상과의 관계 * []부모 []자녀 []배우자 []친척 []형제 []동거인 []시설				

「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 및 「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등록대상 아동 등에 대한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
경 찰 청 장 귀하

담당 공무원	1. 주민등록표 등본	수수료
확인사항	2. 장애인증명서(등록대상 아동 등이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 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(고유식별정보, 민감정보)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- [별지] 사전등록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안내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.
1. ☒ 필수 항목(* 표시 항목) ☒ 지문/사진 ☐ 선택 항목 등록대상 (인), 신청인 (인)
 2. [별지]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안내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. 등록대상 (인), 신청인 (인)
 3. [별지]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안내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. 등록대상 (인), 신청인 (인)

[별지] 개인정보(고유식별정보, 민감정보 등) 수집 및 이용 안내

1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

- ◇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** : 아동등(18세 미만 아동,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인, 치매환자)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
- ◇ **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**
 - 필 수 : 등록대상 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주소, 키, 체중, 체격, 얼굴형, 머리색, 국적, 나이
신청인(보호자) 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등록대상과의 관계
 - 선택 : 지문, 얼굴 사진, 흉터, 점 또는 문신, 실종(가출)경력, 주로 다니는 장소, 기타
- ◇ **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(폐기 前 까지)**
 - 아동(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인, 치매환자의 경우 제외)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폐기
 -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요청한 경우 즉시 폐기
- ◇ **동의 거부권리 안내** : 사전등록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등록대상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며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.
필수 항목은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동의 거부 시 사전등록 이용이 불가능하며, 선택 항목은 동의 거부 시에도 사전등록은 가능하나 실제 실종아동등 발견 시 검색(활용) 정보가 없거나 적어 신속한 신원 확인 및 발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◇ **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** : 없 음

2.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

- ◇ **수집·이용 목적** : 아동등(18세 미만 아동,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인, 치매환자)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
▶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로 △사전등록 시 신청인 및 아동등이 보호자 및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△실제 실종아동등 발견 시 신원 확인 및 실종아동등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확인 △실종신고 시 아동등 위치추적 요청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서 조기 발견 도모를 위해 수집·이용합니다.
- ◇ **고유식별정보(수집 항목)** : 등록대상자 및 보호자(신청자)의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- ◇ **보유 및 이용기간(폐기 前 까지)**
 - 아동(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인, 치매환자의 경우 제외)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폐기
 -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요청한 경우 즉시 폐기
- ◇ **동의 거부권리 안내** : 사전등록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등록대상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며 동의 거부시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사전등록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- ◇ **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** : 없 음

3.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

- ◇ **수집·이용 목적** : 아동등(18세 미만 아동,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인, 치매환자)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
- ◇ **민감정보(수집 항목)** : 등록대상자의 건강(신체장애, 병력)
- ◇ **보유 및 이용기간(폐기 前 까지)**
 - 아동(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인, 치매환자의 경우 제외)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폐기
 -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요청한 경우 즉시 폐기
- ◇ **동의 거부권리 안내** : 사전등록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등록대상이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 거부 시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사전등록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- ◇ **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** : 없 음